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2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임호선・이학영・이병진

권칠승 • 이연희 • 복기왕

김주영 · 김승원 · 서왕진

정준호 · 박수현 · 허 영

김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, 장비 품질검사,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,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 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등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14 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체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소방 장비, 용품 등의 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 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⑥ 소방청은 소방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고,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 인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소방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"를 "소방용품·장비의 기술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, 위험물의 안전관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"소방장비"를 "소방용품·장비"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)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(이하 "진흥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-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공단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공단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·제도의 조사 •연구
- 2.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
- 3.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
- 4.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
- 5.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
- 6.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
- 7.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, 출판, 기술 강습 및 홍보
- 8.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9.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
- 10.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- ①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의4(진흥공단에 대한 감독 등) ① 진흥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 - 1.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진흥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
 - 2.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 -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공단에 대하여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,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20조제1항제3호 중 "해외진출에"를 "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"로, "정보제공"을 "정보제공·상담·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산업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공단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인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원의 사업 중 이 법 제14조의3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원 소속 직원 중 이 법 제14조의3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소방산업의 표준화) ① ~	제9조(소방산업의 표준화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체, 공
	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
	개발한 소방 장비, 용품 등의
	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
	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
	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
	마련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⑥ 소방청은 소방기술 표준과
	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
	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
	•강화하고, 국내 산업체들이
	해외 인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
	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제14조(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	제14조(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
립) ① 소방청장은 <u>소방산업의</u>	립) ① <u>소방용품・</u>
<u>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</u> 지원	장비의 기술발전을 통한 연구
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	개발 및 품질관리, 위험물의 안
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을	전관리를
설립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	③

업을 행한다.

- 1.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・제도 의 조사・연구
- 2.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 <삭 제> 업지원
- 3.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
- 4.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 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워
- 5.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 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
- 6.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<삭 제> 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 업
- 7.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, 품질 7. 소방용품ㆍ장비-----인증 및 신기술 · 신제품에 관 한 인증 업무
- 8.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 〈삭 제〉 스의 구축 · 운영, 출판, 기술 강습 및 홍보
- 9. ~ 12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9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3(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)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의 진흥・발전을 효율적으로

-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 진흥공단(이하 "진흥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공단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공단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

 사업을 행한다.
- 1.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

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・제도

 의 조사・연구
- 2.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 업지원
- 3.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<u>지원</u>
- 4.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

 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

 지원
- 5.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

 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
- 6.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

- <u>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</u> <u>업</u>
- 7.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·운영, 출판, 기술 강습 및 홍보
- 8.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
- 9.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 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소 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 행하게 하는 사업
- 10.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

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

 사업
- ⑥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①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<u>제14조의4(진흥공단에 대한 감독</u> <u>등) ① 진흥공단은 사업계획</u>

<신 설>

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 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 원) ① 소방청장 또는 시·도 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도・감독한다.
- 1.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진 흥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한 사업
- 2.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
-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진흥공단에 대하여 업 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,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.

원) ①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<u>해외진출에</u> 관한 <u>정보제공</u>

4. • 5. (생략)

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3. <u>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</u>--<u>정보제공·상담·자문 및 교</u> <u>육 등의 지원</u>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산업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 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.